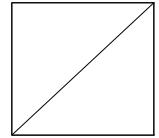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 호	심 의 사 항
심 의 연 월 일	2026. 3. 27. (제 81 회)	

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
운영위원회

제 출 자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
제출 연월일	2026. 3. 23.

1. 의결주문

- 「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, 「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1. 추진방향(안)

- (목표) 신뢰와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아, 연구행정 전반의 패러다임을 자율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선방안 마련
- (추진방향) 연구자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, 현장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

목표	신뢰와 책임 기반의 자율적 연구행정 혁신		
추진 방향	신뢰와 책임 기반 R&D 제도개선	도전혁신형 성과창출 제도기반 마련	현장 친화적 제도운영 정착
추진 전략	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비 자율성 강화 자율성 확대에 비례한 연구자 책임성 강화 자율과 책임을 겸비한 과제 수 제한 정비	과감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평가체계 개선 과제특성에 맞는 평가방식 다양화 시행착오 속 의미있는 성과 실패의 자산화	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상이한 해석 방지를 위한 규정간 정합성 제고 旣 개선된 제도의 현장 착근 강화

II. 주요내용(안)

1 신뢰와 책임 기반의 R&D 제도개선

기본 방향

-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및 과제수행 제한기준 재검토를 통한 연구자율성 대폭 확대
- 확대된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R&D 생태계 조성

- 사용불가능한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집행 자율성을 강화하고 3책5공 등 과제 제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
- 연구비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여 부정사용시 참여제한 등 제재한도 가중

2 도전·혁신형 성과창출 제도기반 마련

기본 방향

- 평가체계를 성실성·혁신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자의 과감한 도전 보장
- 실패과정의 유의미한 경험을 자산화하여 실패가 두렵지 않은 R&D 연구문화 정착

- 연구자가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결과가 아닌 성실성 중심의 평가체계 및 2단계 평가 등 과제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
- 실패했더라도 의미있는 성과에 대한 후속과제 연계 등 재도전 지원

3 현장 친화형 제도운영 정착

기본 방향

- 부처별·전문기관별 상이한 R&D 행정서식의 표준화 등을 통한 정합성 제고
- 旣 개선된 제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교육 병행을 통한 제도의 현장착근 강화

- 부처별 중복 또는 상이한 R&D 행정서식을 정비하고 IRIS 등 유관 연구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제도 정합성 및 실질적 체감도 제고
- 旣개선된 제도에 대한 설명회, 교육 등을 확대하여 연구현장 안착 지원

Ⅲ. 향후 추진계획(안)

① 제도개선 의견수렴(4월~5월)

- 연구현장과 관계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'행정제도개선 의견서'를 작성하여 제도개선 의견 제출
-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(IRIS R&D 신문고) 및 현장 방문, 제도개선 간담회 등 현장 소통 병행 추진

② 현장의견 검토 및 제도개선(안) 마련(6월~8월)

- 중요도, 시의성, 연구현장의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과제로 반영 여부 결정
 - 중·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'27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 추진
- 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자문, 관계부처·연구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요 개선과제 도출 및 제도개선(안) 마련

③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(9월~)

- 제도개선 관련 규정(법, 시행령 등) 및 매뉴얼 개정, 부처별 소관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차년도 시책(施策)에 반영
-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, 연구개발제도 기본교육 등 실시

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2026. 3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차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	1
II. '26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 추진경과	2
III. '26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(안)	3
1. '26년도 제도개선 주안점	3
2. 세부 추진방향(안)	3
① 신뢰와 책임 기반의 R&D 제도개선	4
② 도전·혁신형 성과창출 제도기반 마련	4
③ 현장 친화형 제도운영 정착	5
IV. 향후 추진계획(안)	6
붙임. [양식] '26년도 행정제도개선 의견서	7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

1 의의

- 현장 중심의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*(이하 '연구제도') 개선
 - * 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, 각 부처의 소관 관련 법령·시책 등을 포괄하는 의미
 -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책임성과 자율성 기반의 연구개발 제도를 마련
 - 연구개발 성과제고 및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제도의 합리성 제고
 -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·고도화

2 근거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8조~제30조

- (법 제28조)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
- (법 제29조)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제시
 - (제1항)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
 - (제2항) 관계부처, 연구기관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
 - (제3항)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
 - (제4항) 부처별로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소관 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
- (법 제30조) 연구기관 등의 내부규정과 활동에 대해 개선 권고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, 이행 실태 확인·점검

II. '26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 추진경과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 시행('21.1.1.)
- 매년 「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(안)」 마련 및 법령 등 개정('21~)

< 연도별 주요 개선사항 >

연도	주요 내용
20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종료 후 논문 등 출판비용 지원, 연구노트 형식 등 자율성 제고 ○ 경쟁형 R&D 활성화를 위해 조기 중단 근거 마련 등
20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상향, 해외 우수연구자 체제비 등 지원 ○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파견비용 지원 등
202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공동연구 매뉴얼, 서식,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예외 기준 마련 ○ 국외 수혜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
202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인건비 기관 단위 관리 확대 및 잔액 제도 개선 ○ 육아휴직 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금 등 지원, 초기 중견기업 부담 완화 등
20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무 상황 중심의 기업의 정부 R&D 신청 제한 완화 ○ 증빙이 과도한 비목의 단계별 간소화 추진 및 소액과제 샘플링 정산 도입

-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「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」 마련('25.11.7)

< 혁신방안의 주요내용 >

<p>도전·창의적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감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평가제도 혁신 · 연구 외의 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행정부담 완화 · 연구몰입과 성과제고를 돕는 연구지원인력 확충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'26년 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('26.1~2월, 총 7회)

※ (권역별 간담회) 충청권(1.26.), 호남권(1.28.), 영남권(2.2.), 수도권(2.5.)

(연구지원인력 간담회) 출연연(2.9.), 대학(2.10. 오전), 과기특성화대(2.10. 오후)

< 연구현장의 주요의견 >

- ① 관리 중심적 제도개선이 아닌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
- ② 정부의 R&D 정책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방향 기대
- ③ 새롭고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필요
- ④ 매년 해당되는 항목을 판단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선 필요
- ⑤ 혁신법 취지와 달리 여전히 보수적으로 해석·적용되고 있는 규정 점검 및 개선 필요

Ⅲ. '26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(안)

1 '26년도 제도개선 주안점

- ▶ (정책적 일관성 유지) R&D 생태계 혁신방안 등 R&D 정책 이행계획 반영
- ▶ (현장의 체감성 강화)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중심 검토
- ▶ (규정간 정합성 제고) 부처별·담당자별 상이한 해석 및 적용 최소화 추진

2 세부 추진방향(안)

- (목표) 신뢰와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아, 연구행정 전반의 패러다임을 자율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선방안 마련
- (추진방향) 연구자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, 현장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

목표	신뢰와 책임 기반의 자율적 연구행정 혁신		
추진 방향	신뢰와 책임 기반 R&D 제도개선	도전혁신형 성과창출 제도반 마련	현장 친화적 제도운영 정착
추진 전략	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비 자율성 강화	과감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평가체계 개선	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
	자율성 확대에 비례한 연구자 책임성 강화	과제특성에 맞는 평가방식 다양화	상이한 해석 방지를 위한 규정간 정합성 제고
	자율과 책임을 겸비한 과제 수 제한 정비	시행착오 속 의미있는 성과 실패의 자산화	既 개선된 제도의 현장 착근 강화

1 신뢰와 책임 기반의 R&D 제도개선

기본 방향

-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및 과제수행 제한기준 재검토를 통한 연구자율성 대폭 확대
- 확대된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R&D 생태계 조성

- ① **(연구비 자율성 강화)** 사용불가능한 연구비 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^{으로}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행정부담 완화 및 집행 자율성 강화
 - *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비목 개설 및 증빙자료 간소화 병행 추진
- ② **(연구자 책임성 강화)** 연구개발비 집행 자율성 확대에 비례한 책임성 강화^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 기반의 연구환경 조성
 - *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가중·합산 등
- ③ **(과제 제한 재검토)** 경직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연구자의 역량과 집중도를 기반으로 과제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
 - *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(3책 5공) 제도 등에 대한 재검토 추진

2 도전·혁신형 성과창출 제도기반 마련

기본 방향

- 평가체계를 성실성·혁신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자의 과감한 도전 보장
- 실패과정의 유의미한 경험을 자산화하여 실패가 두렵지 않은 R&D 연구문화 정착

- ① **(평가체계 개선)** 연구자가 목표달성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성실 수행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^{*}
 - * 평가등급 및 단기적·정량적 지표 폐지, 투명성 제고 및 혁신성 중심의 정성평가 등 추진
- ② **(평가방식 다양화)** 합숙평가, 2단계 평가 등 과제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식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질적 제고 촉진

- ③ **(실패의 자산화)** 목표달성은 실패하였으나 의미있는 성과* 발굴, 실패에 대한 제도전 지원 방안 마련 및 실패 용인 문화 확산 등 추진

* 시행착오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, 실수나 실험오류 과정에서 우연히 새로운 중대한 발견을 한 성과 등

3 현장 친화형 제도운영 정착

기본 방향

- 부처별·전문기관별 상이한 R&D 행정서식의 표준화 등을 통한 정합성 제고
- 既 개선된 제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교육 병행을 통한 제도의 현장착근 강화

- ① **(실질적 개선 체감)** 부처별 중복 또는 상이한 R&D 행정서식 및 유관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 향상 추진

* 사업별 기타서식 요구 → 표준서식으로 일원화(그 외 자료 요구는 원칙적 금지)

- 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정보 연계* 확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입력 부담 완화 등 연구자 편리성 강화

*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RCMS, Ezbaro)-유관 시스템(연구개발기관, 전문기관 등)

- ② **(정합성 제고)**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지원하고자 하는 혁신법 취지와 달리 연구몰입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을 요구하는 부처 규정 지속 정비

* 혁신법과의 정합성 검토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 담당자별 해석 차이를 최소화

- ③ **(현장착근 강화)**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既 개선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후 점검 및 보완 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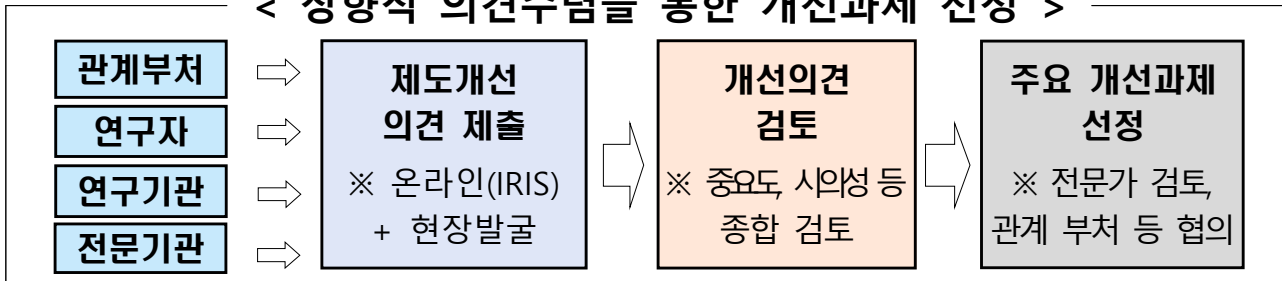
- 연구현장 점검단*을 운영하여 개선된 제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단계별 병목사항**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마련

* 연구현장 점검단(산·학·연 약 50명) 운영을 통해 '23년~'24년 개선사항 반영여부 검토

** ①개정된 법령·지침의 체계성 ②IRIS시스템 등 실행수단 준비 ③현장 수용도 등

IV. 향후 추진계획(안)

<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과제 선정 >



①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(4월~5월)

- 연구현장과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'행정제도개선 의견서'(붙임)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 -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방향 외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안 가능
- 온라인 의견수렴*, 현장방문, 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통해 의견수렴
 - *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R&D 신문고에 '연구현장 의견제안' 게시판 운영

② 중요도·시의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(안) 마련(6월~8월)

- 개선 수요의 시의성, 중요도, 연구현장의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여부 결정*
 - *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개선수요 검토
- 既 개선된 제도의 부처별 적용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추진 필요시 차기 제도개선에 환류하여 개선 지속
- 관계부처·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개선(안) 심의·확정

③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(9월~)

- 제도개선 관련 규정(법, 시행령 등) 및 매뉴얼 개정, 부처별 소관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차년도 시책(施策)에 반영
-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, 연구개발제도 교육 등 실시

○○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

구분	부처명	부서명	직위	이름	이메일
주관기관	○○부	○○과	과장	-	-
			사무관	-	-
유관기관	○○진흥원	○○센터	센터장	-	-
			연구원	-	-

1. 제안명:	
2. 관련 근거	※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
3. 제안 목적	
4. 현황 및 문제점	※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
5. 발굴경로	□ 연구자 민원, □ 정책연구, □ 자체조사(설문, 통계 등), □ 업무수행 관련 자체 발굴 □ 기타 ※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[붙임]으로 제출
6. 개선 의견	※ 제도개선 방안 요약
	예시 ※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
7. 규정 개정안	※ 규정명, 조항, 개정 전후 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재
8. 기본지침의 개선 방향과의 관련성	
9. 기대효과	

※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~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

담당자	김희선 사무관
연락처	전 화 : 044-202-6957 E-mail : kimhs5023@korea.kr